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소장 최윤정)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항목 정비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 및 수수료 정비(안 별표)

나.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방법 변경(안 제5조)

다. 상위법과 일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의미가 모호한 “진료수가”를 삭제함.
- 안 별표에서는 관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함.

○ 검토 결과

- 「지역보건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區)는 본 조례를 제정('88.5.1.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이번 일부개정은 관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4.11.23.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3,000원으로 이번 일부개정 이후에 금액이 바뀌는 사항이 아니기에 상위법 시행 전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아울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개정되어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99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24. 9. 30.

제안자: 박현우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조례에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결제 방법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중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납부방법) ----- -----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납부방법) -----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20년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안 제5조 중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진단항목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아.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목에 '타'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자.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차.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카. 결핵진단서	1통	300원	
	타. 그 밖에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파.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하.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거.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 (CD)	3,000원		
너. 외국인 결핵확인서	1통	1,500원		
2.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1ml	4,000원	
	2) 소아	0.5ml	2,000원	
	나. 장티푸스	0.5ml	5,000원	
다. 신증후군출혈열	0.5ml	9,000원		
3. 검사	가. 간염검사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검사			
	1) AFP	1회	7,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 원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바. 콜밀도 검사	1회	8,000원	
4. 구강 보건실 진료 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u>자</u>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사람</u>----- ----- ----- ----- ----- ----- -----</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②-----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p>

<p>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u>20년</u> <u>이상</u>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p> <p>9.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p> <p>10. (생략)</p> <p>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 비는 <u>선납으로 한다.</u></p>	<p>----- ----- <u>20년</u> <u>이상</u> ----- -----</p> <p>9. <u>그 밖에</u> ----- -----</p> <p>10. (현행과 같음)</p> <p>제5조(납부방법) ----- --- <u>그 날 납부하여야 한다.</u></p>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9
----------	-----

제출연월일: 2024. 9.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을 정비하고 맞춤법 등 문장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진단결과서 진단 항목 및 수수료 정비(안 별표)
- 나.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 방법 변경(안 제5조)
- 다. 상위법과 일치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4. 8. 1.~8. 22. / 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20년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조 중 “선납으로 한다”를 “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진단항목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다.
	아.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목에 '타'목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자.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차.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카. 결핵진단서	1통	300원	
	타. 그 밖에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파.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하.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거.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 (CD)	3,000원	
너. 외국인 결핵확인서	1통	1,500원		
2.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1ml	4,000원	
	2) 소아	0.5ml	2,000원	
	나. 장티푸스	0.5ml	5,000원	
	다. 신증후군출혈열	0.5ml	9,000원	
3.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검사			
	1) AFP	1회	7,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 원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바. 콜밀도 검사	1회	8,000원	
4. 구강 보건실 진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 하악 당 1회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u>자</u>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사람</u>----- ----- ----- ----- ----- ----- -----</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 ----- -----</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p>	<p>8. ----- ----- -----</p>

<p>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u>20년</u> <u>이상</u>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p> <p>9.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p> <p>10. (생략)</p> <p>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 비는 <u>선납으로 한다.</u></p>	<p>----- ----- <u>20년</u> <u>이상</u> ----- -----</p> <p>9. <u>그 밖에</u> ----- -----</p> <p>10. (현행과 같음)</p> <p>제5조(납부방법) ----- --- <u>그 날 납부하여야 하고 현</u> <u>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u> <u>있다.</u></p>
---	--